

# 예 산 총 칙

2022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10,116,000	12,303,480
일반회계	407,000,000	12,210,000
특별회계	3,116,000	93,480
기타특별회계	3,116,000	93,48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019,000	30,570
지하수 관리 특별회계	30,000	900
주차장사업특별회계	2,067,000	62,01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,418,389천원으로 한다.  
(일반예비비 2,000,000천원,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,418,389천원)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